

# 입법 예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1-110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전라북도교육감

##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입법 예고

### 1. 제정이유

-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과 교육기본법 제12조의 학교교육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 보호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4항의 학생 인권 보장 및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의거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등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나. 인권교육과 인권실천계획 등 학생 인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안 제4장)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7일 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서면(팩스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내용

- 1)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2)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보내실 곳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정책과

- 1) 주소 : (우)560-890 전라북도 전주시 흥산로 111번지  
전라북도교육감(참조 : 학교정책과)

- 2) 전화 : 063) 239-3253, 팩스 : 063) 220-9408(담당장학사 김호훈)

붙임 1.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1부.

- 2. 관련 법령 1부. 끝.

##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 3 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 장 학생의 인권

###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5 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 6 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체벌이라 함은 교직원이 학생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폭력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 8 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여학생은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 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허용되지 아니 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기,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함)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0조(학생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여학생이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③ 학교는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

다.

-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⑧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 3 장 학생인권의 진흥

###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과 도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제30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아용 설명서와 교육용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4조**(학생인권교육원)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교육원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5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통계연보 발간 시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통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 (인권 모니터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자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
4.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4.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생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학원의 인권보장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학원의 설

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원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 4 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조직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3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4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5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6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과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지역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9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5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을 한 경우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51조(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9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관 련 법 령

###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